

의안번호	2203502
의 퇴 인	정희용의원
회 답 일	2024. 9. 26.
추 계 번호	24B3430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산림환경보호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억원(연평균 4,0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산림환경보호협회의 설립 등 (안 제48조)	40	40	40	40	40	200

주: 추계기간 동안 지원비 규모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자료: 환경부 및 행정안전부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 (산림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산림청장은 산림을 건강하게 보호하고 산림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에 대한 산림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1항)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2	안 제9조 (산림환경보호지역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림환경보호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지역계획, 시·군·구지역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지역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제2항)	의무·재량 규정
3	안 제11조 (산림생태계의 연결성 조사 등)	산림청장은 산림 내 물질의 순환 및 생물의 이동이 자연스러운 상태, 단절·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림생태계의 연결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의무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산림생태계의 연결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림생태계 연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2항)	
4	안 제12조 (산림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의 효과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산림생태계, 산림생물다양성 및 산림생물자원 정보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전산화한 산림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1항) 산림청장은 필요한 경우 산림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5	안 제21조 (주민지원사업)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의 산림보호 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제1항)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이 주거용 주택(단독주택만 해당한다)의 증축·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상·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설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6	안 제24조 (산림생태탐방의 육성 등)	산림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중 산림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지역에서 산림생태탐방 및 교육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산림청장은 산림생태탐방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림생태탐방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 지역주민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7	안 제26조 (특별산림보호종보전대책 수립 등)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산림보호종의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산림청장은 특별산림보호종의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의 증식·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2항) 산림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점용자등에게 권고사항의 준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5항)	의무·재량 규정
8	안 제27조 (특별산림보호종의 관리)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특별산림보호종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중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산림생물다양성보호구역 또는 생태숲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산림보호종의 보존·관리·증식·이용·품종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36조 (보호수 현황조사 등)	산림청장은 보호수가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호수를 보호·관리할 수 있음. 이 경우 제20조 규정을 준용함(제3항)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보전을 위하여 상시적인 질병·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하 “보호수안전관리사업”이라 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음(제4항) 1. 보호수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2. 보호수의 병해충 피해 등 예방 및 치료행위 3. 보호수 주변 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4. 보호수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5. 그 밖에 보호수안전관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호수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보호수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5항)	의무·재량 규정
10	안 제37조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등)	산림청장은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산림의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현지 내 및 현지 외 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음(제2항) 1. 생태숲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사업 2. 산림생물다양성의 조사 및 관리 사업 3. 산림생물다양성의 보호 및 증식 사업 4. 산림생물다양성의 연구 및 개발 사업 5. 그 밖에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무·재량 규정
11	안 제39조 (기타보전조치지역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산림청장은 기타보전조치지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타보전조치지역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산림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기타보전조치지역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관할 기타보전조치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역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6항)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계획과 지역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함(제7항)	
12	안 제40조 (기타보전조치지역의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및 모니터링)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타보전조치지역 내에서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보호·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제1항)	재량·의무 규정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생물다양성 보호·관리 사업 등 기타보전조치지역 내 산림생물다양성 현지 내 보전 효과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함(제4항)	
13	안 제42조 (현지의보전원의 조성·지정 등)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생물다양성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현지의보전원을 조성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현지의보전원을 조성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14	안 제43조 (산림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이하 “산림생물자원이용시설”이라 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제1항) 1. 산림생물자원을 보전·관리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특별산림보호종, 보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가치가 높은 산림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설 3. 산림생물자원의 수집, 증식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시설 4. 산림생물자원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시설 5. 그 밖에 산림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설	재량규정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림생물자원이용시설을 조성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15	안 제47조 (산림환경보호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환경의 보호를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6	안 제48조 (산림환경보호협회의 설립 등)	산림환경의 보호에 관한 교육·훈련, 조사 및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산림환경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함)를 둘(제1항)	의무·재량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4항)	
17	안 제50조 (연구·기술개발 등)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연구 및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제1항) 1. 산림환경 보전 및 증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2. 산림생물다양성의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및 평가 3.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복원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산림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분석 5. 기타보전조치지역의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효과 조사 및 연구 6. 외래식물의 관리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7. 그 밖에 산림의 보전·이용에 필요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의무·재량 규정
18	안 제51조 (산림환경모니터링센터의 지정 등)	산림청장은 산림환경보호 및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증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산림환경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라 함)를 지정할 수 있음(제1항) 산림청장은 모니터링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9	안 제52조 (국제협력)	산림청장은 산림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련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산림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산업인력·기술의 교류,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 개정안은 현행 「산림보호법」의 제명을 「산림환경보호법」으로 변경하면서, 산림재난 및 인위적 훼손 방지 위주에서 벗어나 산림생태계, 산림경관 등을 포함한 산림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로의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임¹⁾

□ 동 전부개정법률안의 조항 중 현행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은 현행 사업이 유지되어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다만, 동일·유사한 조문이더라도 현행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조문은 재정수반요인으로 간주함

※ [참고자료] 현행법 및 전부개정법률안 비교 참고

□ 재정수반요인 가운데 대부분의 조항은 자체적으로 수립·시행가능하거나 현행 사업예산으로 충당가능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다만, 일부 조항은 현 시점에서 사업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8조 (산림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	• 미대상 - 자체적으로 수립 가능한 사항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2	안 제9조 (산림환경보호지역계획의 수립)	—	• 미대상 - 자체적으로 수립 가능한 사항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3	안 제11조 (산림생태계의 연결성 조사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재 산림생태계의 연결성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았고, 조사범위 및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 소요예산 산정은 어려움															
4	안 제12조 (산림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 미대상 - 산림자원정보화 사업(산림자원통합관리시스템) 및 국가표준식물종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시스템 구축·운영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tr><td>산림자원정보화</td><td>754</td><td>754</td><td>754</td><td>754</td></tr><tr><td>국가표준식물종관리 프로그램 개선</td><td>—</td><td>605</td><td>—</td><td>85</td></tr></table>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산림자원정보화	754	754	754	754	국가표준식물종관리 프로그램 개선	—	605	—	85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산림자원정보화	754	754	754	754														
국가표준식물종관리 프로그램 개선	—	605	—	85														
5	안 제21조 (주민지원사업)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재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수															

1) 이 법률안은 정회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의안번호 제22002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립되지 않았고, 지원범위 및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 시점에서 소요예산 산정은 어려움															
6	안 제24조 (산림생태탐방의 육성 등)	—	• 미대상 산림생태 탐방프로그램은 기 설치된 ‘산림생태관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어, ‘산림생물다양성증진’ 세부사업 내 ‘산림생태관리센터 조성·운영’ 내역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단위: 백만원)<table><tr><th>사업명</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tr><td>산림생태관리센터 운영</td><td>2,527</td><td>2,610</td><td>2,697</td><td>2,571</td></tr></table>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산림생태관리센터 운영	2,527	2,610	2,697	2,571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산림생태관리센터 운영	2,527	2,610	2,697	2,571														
7	안 제26조 (특별산림보호종 보전 대책 수립 등)	—	• 미대상 자체 수립 가능하며,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복원 대책’이 기 수립되어 추진중															
8	안 제27조 (특별산림보호종의 관리)	—	• 미대상 특별산림보호종의 복원·증식, 위기종·피압종에 대한 생육환경 조성 등 종 다양성 보존을 위한 경영활동 등은 ‘산림생물다양성증진’ 세부사업 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및 ‘멸종위기 한국고유 침엽수 보전·복원’ 내역사업으로 추진중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단위: 백만원)<table><tr><th>사업명</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tr><td>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td><td>1,675</td><td>1,675</td><td>1,675</td><td>1,675</td></tr><tr><td>멸종위기 한국고유 침엽수 보전·복원</td><td>900</td><td>2,100</td><td>2,100</td><td>2,100</td></tr></table>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1,675	1,675	1,675	1,675	멸종위기 한국고유 침엽수 보전·복원	900	2,100	2,100	2,100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1,675	1,675	1,675	1,675														
멸종위기 한국고유 침엽수 보전·복원	900	2,100	2,100	2,100														
9	안 제36조 (보호수 현황조사 등)	—	• 미대상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자체 운영으로 연말 정기 통계자료 제출중 - 토지의 매수는 ‘국유림 확보 및 관리’ 세부사업의 ‘사유림매수’ 내역사업으로 산림보호구역 등에 대해 매수사업 추진중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단위: 백만원)<table><tr><th>사업명</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tr><td>사유림매수</td><td>40,023</td><td>38,023</td><td>46,153</td><td>46,158</td></tr></table>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사유림매수	40,023	38,023	46,153	46,158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사유림매수	40,023	38,023	46,153	46,158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 생활권 내 노거수의 안전·생육상태를 진단하고 현황 등 실태를 파악하는 ‘보호수 안전관리사업’은 ‘산림생물다양성증진’ 세부사업 내 ‘보호수 안전관리’ 내역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사업으로 추진('22~'23)하였으나 '24년부터 예산 삭감됨에 따라, 사업규모에 따른 유동성으로 비용추계 어려움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tr><td>보호수 안전관리</td><td>—</td><td>750</td><td>750</td><td>—</td></tr></table>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보호수 안전관리	—	750	750	—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보호수 안전관리	—	750	750	—														
10	안 제37조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등)	—	• 미대상 —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한 계획은 자체수립 가능 — 생태숲, 수목원·정원 조성 사업 및 산림생물다양성 조사·관리·보호·증식·연구 등 사업은 기존 '산림생물다양성증진' 및 '정원조성관리' 세부사업으로 추진중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tr><td>산림생물다양성증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td><td>1,575</td><td>1,575</td><td>1,575</td><td>1,575</td></tr><tr><td>정원조성관리</td><td>22,012</td><td>37,502</td><td>34,128</td><td>24,690</td></tr></table>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산림생물다양성증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1,575	1,575	1,575	1,575	정원조성관리	22,012	37,502	34,128	24,690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산림생물다양성증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1,575	1,575	1,575	1,575														
정원조성관리	22,012	37,502	34,128	24,690														
11	안 제39조 (기타보전조치지역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	• 미대상 — 자체 수립 가능한 사항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12	안 제40조 (기타보전조치지역의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및 모니터링)	—	• 미대상 — 현행 '산림생물다양성증진' 세부사업의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관리' 내역사업으로 운용 가능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tr><td>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관리</td><td>1,575</td><td>1,575</td><td>1,575</td><td>1,575</td></tr></table>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관리	1,575	1,575	1,575	1,575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관리	1,575	1,575	1,575	1,575														
13	안 제42조 (현지외보전원의 조성·지정 등)	—	• 미대상 — 현지외보전은 '산림생물다양성증진' 세부사업의 '산림습원보전사업'내 '현지외 보전 및 복원' 내내역사업과 '멸종위기 한국고유 침엽수 보전·복원' 내 '현지외보존원 조성' 내내역사업으로 추진중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tr><td>산림습원보전사업 (현지외 보전 및 복원)</td><td>200</td><td>200</td><td>200</td><td>200</td></tr><tr><td>멸종위기 한국고유 침엽수 보전·복원(현지외보존원 조성)</td><td>328</td><td>328</td><td>328</td><td>328</td></tr></table>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산림습원보전사업 (현지외 보전 및 복원)	200	200	200	200	멸종위기 한국고유 침엽수 보전·복원(현지외보존원 조성)	328	328	328	328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산림습원보전사업 (현지외 보전 및 복원)	200	200	200	200														
멸종위기 한국고유 침엽수 보전·복원(현지외보존원 조성)	328	328	328	328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4	안 제43조 (산림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등)	—	• 미대상 — 현행 ‘산림생물다양성증진’ 세부사업의 ‘산림식물자원 보전관리(무안후계원조성)’ 내역사업으로 추진 중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tr><td>산림식물자원보전관리</td><td>—</td><td>—</td><td>—</td><td>300</td></tr></table>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산림식물자원보전관리	—	—	—	300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산림식물자원보전관리	—	—	—	300														
15	안 제47조 (산림환경보호활동의 지원)	—	• 미대상 — 산림환경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행사 등을 지원하며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표창 및 상장’ 지원 중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16	안 제48조 (산림환경보호협회의 설립 등)	○	• 유사사례 참고															
17	안 제50조 (연구·기술개발 등)	—	• 미대상 — 산림환경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등은 ‘산림생물다양성증진’ 및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기술개발(R&D)’ 세부사업으로 추진중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tr><td>산림생물다양성 증진 (생태교란식물 모니터링 및 제거사업)</td><td>—</td><td>—</td><td>200</td><td>200</td></tr><tr><td>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기술개발(R&D)</td><td>300</td><td>300</td><td>300</td><td>—</td></tr></table>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생태교란식물 모니터링 및 제거사업)	—	—	200	200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기술개발(R&D)	300	300	300	—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생태교란식물 모니터링 및 제거사업)	—	—	200	200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기술개발(R&D)	300	300	300	—														
18	안 제51조 (산림환경모니터링센터의 지정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시점에서 산림환경보호 및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증진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산림환경모니터링센터의 구체적인 사업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19	안 제52조 (국제협력)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시점에서 정보의 교류, 산업인력·기술의 교류,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의 사업계획이 정해지지 않아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산림환경보호협회의 설립 등(안 제48조)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산림환경보호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산림환경보호협회의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지원 범위 및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소요예산 산출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례를 바탕으로 추계
- 최근 4년(2021~2024년)간 환경부의 자연보전단체, 행정안전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1개 단체당 약 30~47백만원 규모의 예산 지원
 - 유사사례를 고려하여 산림환경보호협회 지원경비 규모는 매년 4,000만원으로 가정
 - 이때, 추계기간 동안 지원비용 단가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2] 환경부 및 행정안전부 민간단체 지원 예산 현황: 2021~2024년

(단위: 백만원)

소관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1	2022	2023	2024	비고(평균 등)
환경부	자연보전단체 (1831-307)	한국자연환경보전 협회	42	38	38	—	약 39백만원
		한국자연공원협회	50	45	45	—	약 47백만원
행정안전부	비영리 민간단체지원 (1140-300)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 업	6,848	6,500	6,500	3,250	• 108~180개 단체 • 단체당 30~36백 만원 지원

자료: 환경부 및 행정안전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2023.1.

- 추계 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산림환경보호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억원으로 추계됨

[표 3] 산림환경보호협회 경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산림환경보호협회 지원경비	40	40	40	40	40	200

주: 추계기간 동안 지원비 규모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자료: 환경부 및 행정안전부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재량지출성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규모의 예산 편성을 전제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현행법 및 전부개정법률안 비교

(산림청 제출자료)

<현행법 및 전부개정법률안 비교>

현행법	전부개정법률안
제명: 「산림보호법」	제명 변경: 「산림환경보호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산림환경보호의 기본원칙)
<신 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제7조(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신 설>	제8조(산림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신 설>	제9조(산림환경보호지역계획의 수립)
제19조(산림의 건강·활력도)	제10조(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 등)
<신 설>	제11조(산림생태계의 연결성 조사 등)
<신 설>	제12조(산림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제13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제8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14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10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5조(산림보호구역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16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제17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18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11조의2(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	제19조(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
제12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교환)	제20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교환)
제12조의2(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교환 등)	<삭 제>
<신 설>	제21조(주민지원사업)
제10조의4(효과성평가)	제22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효과성평가)
제10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제23조(국립공원 안의 산림보호구역 관리 등)
<신 설>	제24조(산림생태탐방의 육성 등)
<신 설>	제25조(특별산림보호종의 지정)
<신 설>	제26조(특별산림보호종 보전대책 수립 등)
제18조의2(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관리)	제27조(특별산림보호종의 관리)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채취 금지 등)	제28조(특별산림보호종의 굴취·채취 금지 등)
제18조(생태숲의 지정 등)	제29조(생태숲의 지정 등)
제13조(보호수의 지정·고시)	제30조(보호수의 지정·고시)
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제31조(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제1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제32조(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현행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3조의4(보호수의 지정해제)	제33조(보호수의 지정해제)
제13조의5(보호수 심의위원회)	제34조(보호수 심의위원회)
제13조의6(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제35조(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신 설>	제36조(보호수 현황조사 등)
<신 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	제37조(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등)
<신 설>	제38조(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 실행 지역의 지정 등)
<신 설>	제39조(기타보전조치지역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신 설>	제40조(기타보전조치지역의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및 모니터링)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41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신 설>	제42조(현지외보전원의 조성·지정 등)
<신 설>	제43조(산림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
제16조(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제44조(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제14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 등)	제45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 등)
제17조(산림보호원의 고용)	제46조(산림보호원의 고용)
<신 설>	제47조(산림환경보호활동의 지원)
<신 설>	제48조(산림환경보호협회의 설립 등)
제46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 등)	제49조(명예산림보호감시원의 위촉 등)
<신 설>	제50조(연구·기술개발 등)
<신 설>	제51조(산림환경모니터링센터의 지정 등)
<신 설>	제52조(국제협력)
제20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의 수립	<삭 제>
제21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연도별계획	「산림재난방지법안」 (의안번호 제2200211호)으로 이관
제21조의2 산림병해충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	
제21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제53조(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제21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제54조(나무의사등의 자격 취득)
제21조의5(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제55조(나무의사등의 결격사유)
제21조의6(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제56조(나무의사등의 자격증 발급 등)
제21조의7(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제57조(나무의사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제21조의8(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제59조(나무병원의 등록)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제60조(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제21조의11(한국나무의사협회)	제61조(한국나무의사협회)
제21조의12(처방전 발급 등)	제62조(처방전의 발급 등)
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	제63조(나무의사의 교육)
제21조의14(보고·검사 등)	제64조(보고·검사 등)
제22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삭 제>
제23조 예찰	「산림재난방지법안」 (의안번호 제2200211호)으로 이관
제24조 방제명령 등	

현행법	전부개정법률안
제25조 산림병해충의 방제 제26조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제27조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의 지정·해제 등 제27조의2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등 제28조 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제29조 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제30조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 제31조 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등 제32조 산불경보의 발령 및 조치 제33조 산불의 예방 등 제34조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제35조 산불방지 교육 제35조의2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설립 등 제35조의3 협회의 업무 제35조의4 회원의 자격 제35조의5 협회의 정관 제35조의6 협회의 운영 경비 제35조의7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6조 산불 신고 및 보고 제37조 산불 진화 통합지휘 제38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설치·운영 제39조 협조 제40조 산불방지에 대한 문책 요구 등 제41조 산불진화단 등의 설치 제42조 산불 조사 제43조 산불피해지의 복구 등 제44조 사상자에 대한 보상 제45조 산불 대응의 평가·분석	<삭 제> 「산림재난방지법안」(의안번호 제2200211호)으로 이관
제45조의2 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시행 제45조의3 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수립·시행 제45조의4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운영 제45조의5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제45조의6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및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등 제45조의7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제45조의8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45조의9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제45조의10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45조의11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제45조의12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산지 매수·교환 제45조의13 산사태예방 교육	

현행법	전부개정법률안
제45조의14 산사태 신고 및 보고 제45조의15 산사태대응팀의 설치 제45조의16 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제45조의17 산사태 대응의 평가·분석 제45조의18 산사태예방에 대한 문책 요구 등	
제47조(산림재해보험 등의 가입)	<삭 제> 「산림재난방지법안」(의안번호 제2200211호)으로 이관
<신 설>	제65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48조(포상)	제66조(포상)
제48조의2(수수료)	제67조(수수료)
제48조의3(청문)	제68조(청문)
제51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제69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제5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70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49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71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53조(벌칙)	제72조(벌칙)
제54조(벌칙)	<삭 제>
제54조의2(벌칙)	<삭 제>
제55조(몰수와 추정)	제73조(몰수와 추정)
제56조(양벌규정)	제74조(양벌규정)
제57조(과태료)	제75조(과태료)

자료: 전부개정안 및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